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40
----------	-----------

제출연월일	2008. 10.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체결된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 무상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승강기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 대학은 군 출연재산에 대해 교육용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관리

다. 대학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 필요한 경우 수시 제출

마. 출연재산과 관련한 보고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군비 출연과 관련한 운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의 검사 실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7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제40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15억원)

다. 합 의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08. 9. 23 ~ 10. 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산업”이란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술혁신지원기관”이란 승강기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4. “산·학·연·관 협력”이란 기업, 대학, 기술혁신지원기관, 도, 군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 교지,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출연 등)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한다.

② 군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
2. 승강기산업 기술연구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촉진
3. 승강기산업 연관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4.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학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대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출연금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출연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